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('22.12.31)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3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9. 8.~ 9. 28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,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소상공인담당관, 오승백, 2133-5190